

# 예 산 총 칙

2025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25년도 세입 ·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세입 · 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    | 834,056,383 | 25,021,691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   | 727,400,000 | 21,822,000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    | 106,656,383 | 3,199,691  |
| 공기업특별회계               | 11,989,981  | 359,699    |
|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         | 11,989,981  | 359,699 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   | 94,666,402  | 2,839,992  |
|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         | 970,348     | 29,110     |
| 주차장특별회계               | 773,226     | 23,197     |
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   | 2,777,962   | 83,339    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    | 29,144,410  | 874,332   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         | 1,137,507   | 34,125     |
| 치수사업특별회계              | 729,219     | 21,877    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| 810,406     | 24,312     |
|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특별회계      | 55,151,067  | 1,654,532  |
| 도시개발특별회계              | 3,004,446   | 90,133     |
|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       | 167,811     | 5,034      |

제 2 조 세입 ·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 · 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,991,263천원으로 한다.

일반회계 재해 · 재난예비비는 3,117,638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무활동경비,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7 조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, 특별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.